

고전의 재발견 9
딱풀 시리즈 한권이면 논술도 교양도 OK

딱맞게 풀어쓴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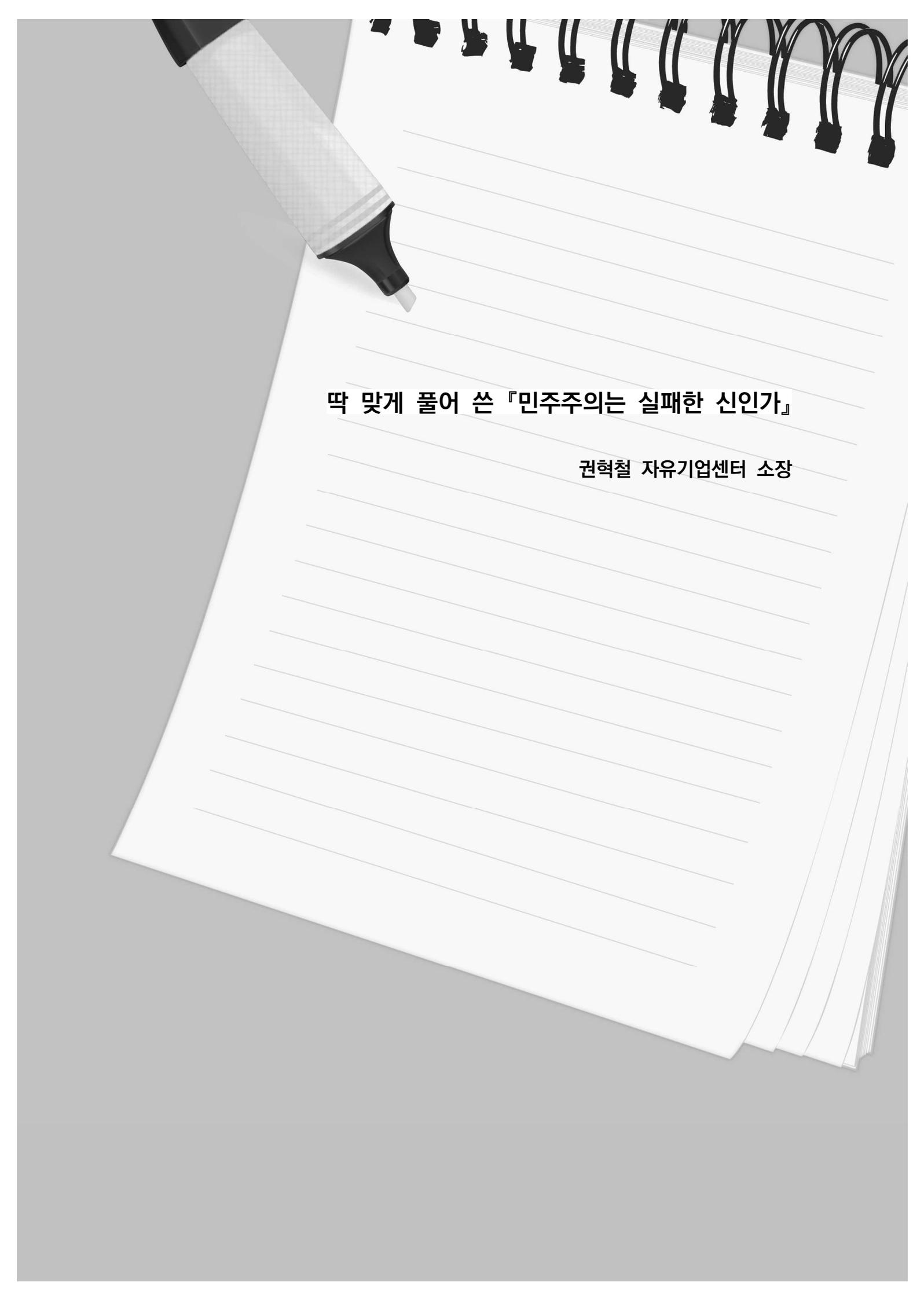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본 자료는 무료지만,
유익하다면 기부해 주세요.

<http://www.cfe.org/info/sponsor.php>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spiral-bound notebook. The notebook is open, showing several pages with horizontal lines. A pen with a textured grip and a black barrel is resting on the top left page. The spiral binding is visible at the top of the notebook. The background is a plain, light-colored surface.

딱 맞게 풀어 쓴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

차 례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는 어떤 책인가? ... 3

1장 시간선호, 정부, 반문명화의 과정 ... 5

1. 시간선호
2. 시간선호와 삶의 유형 및 문명화 과정
3. 시간선호, 사유재산, 범죄 및 정부
4. 군주제에서 민주제로의 전환은 문명퇴행과정

2장 군주제, 민주주의 및 자연적 질서의 이념 ... 16

1. 민주제 하에서의 착취의 심화와 현재지향성의 강화
2. 민주주의의 미래와 자연적 질서

3장 민주주의 정부 자체가 문제 ... 21

4장 부도덕한 민주주의의 민낯 ... 25

5장 ‘발로 하는 투표’가 중요하다 ... 27

6장 자유이민(자유이주)인가 제한이민(제한이주)인가? ... 29

7장 고전적 자유주의의 오류와 자유의 미래 ... 31

8장 ‘사유 무정부주의 사회’에서의 보호와 안전의 문제 ... 34

9장 ‘자유사회’로의 길 ... 38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는 어떤 책인가?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의 저자인 한스-헤르만 호페는 철저한 자유주의자(Libertarian)이다. 그는 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호페는 재산권의 개념을 자신의 논의의 축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연 정부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할 수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사유 재산권과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에 대한 분석 결과 그는 사법권과 징세권의 지역적 독점자로서의 정부는 그런 임무를 결코 수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부는 자유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확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적으로 ‘아나코-캐피탈리즘(Anarcho-Capitalism)’, 즉 ‘무정부-자본주의 사회’로 연결된다. 즉 사적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통해 자신의 안전과 재산권의 보호 임무를 개인 혹은 기업에게 맡기고, 이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한다; 한편 계약자의 안전과 보호의 임무를 맡은 개인이나 기업은 현재의 정부와 같은 독점자가 아니며 따라서 다른 개인 혹은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보수(報酬)도 강제로 걷거나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자와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 받게 된다. 안전과 보호 영역에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호페가 생각하는 ‘자유사회’다.

호페가 볼 때 징세권과 사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모든 정부는 약탈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정부는 사람들의 시간선호율을 높여 저축과 투자를 막고 경제변영을 방해하는 존재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약탈적 성격이 군주제 하에서보다 민주제 하에서 더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민주제 하에서 통치자는 소유주가 아닌 일시적인 ‘임시 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자산가치를 보존하고 나아가 증식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임기 중 많이 걷어 많이 쓰는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진정한 소유주가 없는 민주정부 하에서는 잘 알려진 ‘공유지의 비극’이 벌어진다. 민주정부 하에서는 착취와 낭비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다.

모든 독점이 그러하듯, 정부도 지역적 독점자이기 때문에 안전과 보호의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지는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부의 독점을 깨는 것에 있다. 정부의 독점을 깨는 방법으로 호페가 제안하

고 있는 것은 ‘분리’와 ‘탈퇴’의 자유 보장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주민들(사적 소유자들)이 현재 정부의 보호와 안전 서비스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한 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호와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제안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유주의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민주주의의 민낯은 무엇인가?’ ‘왜곡된 대중민주주의를 탈피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등등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질문들을 던져준다.

이 책은 한스-헤르만 호페가 지은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박효종 역, 자유기업원/나남출판, 2004)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읽기 쉽게 쓰고자 한 것이다.

1장 시간선호, 정부, 반문명화의 과정

1. 시간선호

잘 알려진 마시멜로 이야기부터 보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4살짜리 아이들 60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욕망과 자제심에 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아이들을 각기 한 명씩 다른 방에 배치하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맛있는 마시멜로 하나를 아이 앞에 놓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잠시 나갔다가 15분 쯤 후에 돌아올 건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는다면, 상으로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주겠다.’ 아이들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 마시멜로의 유혹에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혀로 훑아보기도 하는 아이들, 결국 참지 못해 먹는 아이들,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그 다음이다. 10년 후 이 대학 실험팀은 이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다시 불렀다. 총 600명 중 200명을 찾을 수 있었고, 지난 10년간의 성장과정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15분을 참아 상으로 마시멜로를 한 개 더 받았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업성적이 뛰어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만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한 마디로 눈앞의 마시멜로에 만족한 아이들보다는 한순간의 유혹을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¹⁾

이 유명한 마시멜로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시간선호’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들의 시간선호가 어떠한가에 따라 각 개인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선호는 이자율, 저축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선호 현상이다.

미래의 것보다는 현재의 것을 더 좋아하는 시간선호 현상은 보편적이지만, 어

1) 포사다 외 (김경환 외 옮김), 『마시멜로 이야기』, 한국경제신문, 2005.

느 정도나 선호하는 지를 나타내는 ‘시간선호율’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밤 새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겠다며 클럽에서 밤을 새는 학생의 시간선호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미래를 위해 밤 새워 공부하는 학생의 시간선호율은 낮고, 현재를 즐기기 위해 클럽에서 밤을 새는 학생의 시간선호율은 높다고 부른다. 시간선호율이 높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 시간선호율이 현재의 재화가 미래의 재화에 대해 갖는 프리미엄의 크기를 결정한다. 즉 프리미엄은 미래를 위해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다.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이 프리미엄이 매우 커야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프리미엄이 그리 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개인들의 시간선호율의 총합이 사회적 시간선호율이고, 이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반영하여 시장의 이자율이 결정된다. 그리고 시장의 이자율이 사회의 저축과 사회의 투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게 만든다. ‘당장 쓰고 보자’거나 ‘당장 즐기는 것이 최고’라는 식으로 시간선호율이 아주 높은 사회에서는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가 일어나기 어렵다. 반대로, 시간선호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축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저축과 투자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며, 고용증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2. 시간선호와 삶의 유형 및 문명화 과정

이렇듯 중요한 시간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외적인 요소, 생물학적 요소, 개인적 요소, 그리고 사회·제도적 요소들이 있다.

외적 요소란 행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한다. 생물학적 요소란 어린아이에서 어른을 거쳐 노인에 이르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것 역시 외적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외적 및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 제약된 조건 속에서 각 행위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시간선호율을 설정한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

이지만, 각 개인들의 시간선호에 따라 눈앞의 마시멜로를 즉각 먹어치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참고 견디어 마시멜로 하나를 상으로 더 받는 아이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과정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시간선호의 차이에 따라 삶의 유형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시간선호 및 삶의 유형과 관련해서 뱅필드는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계층과 문화 사이, 특히 '상류계층'과 '하류계층' 사이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시간선호를 꼽고 있다. 그는 미래지향성, 자기 훈련, 현재의 만족을 보다 나은 미래와 교환하려는 의지를 상류계층 구성원들의 특징으로, 그리고 현재지향성, 쾌락주의를 하류계층 구성원들의 특징으로 본다. 이런 특징을 갖는 하류계층 구성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들은 가족 붕괴, 난혼, 성병,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폭력, 범죄 등이며, 이런 현상들은 모두 높은 시간선호라는 공통적 요인을 공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이들 하류계층의 낮은 소득과 실업에서 찾는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뱅필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 즉 이들의 높은 시간선호율에 있다고 본다. 실업과 낮은 소득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원인일 따름이고, 사실상 그것들은 높은 시간선호도의 결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류계층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태들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은 바로 높은 시간선호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흔히 낮은 소득과 가난이 '사회적 문제'라고들 하면서 소득 재분배와 복지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뱅필드에 따르면 이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낮은 소득과 가난은 지극히 개인적인 높은 시간선호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시간선호도에 변화가 없는 한 재분배와 복지정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 했던가.

시간선호율이 낮아지면 저축과 투자가 일어난다. 저축과 투자의 시작은 곧 '문명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어린아이와 생존만으로도 급급한 미개인은 저축과 투자를 하지 못한다. 오직 순간적이고 최소한으로 연기된 만족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연적으로 이들에게는 시간선호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의 시간선호율이 낮아져서 저축과 자본이나 내구재의 형성을 허용할 정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문명화 과정이 나타난다. 사람으로 치면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시간선호율이 낮아져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저축-투자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선호율까지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저축-투자자에 의해 자본재가 축적되면 노동의 상대적 희소성은 높아지고 임금은 상승하게 된다. 높아진 임금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풍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이제까지 어쩔 수 없이 저축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시간선호율도 낮아지게 된다.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저축-투자자들이 세우는 계획들의 범위와 지평은 계속 확대된다. 저축-투자자가 이렇게 확대된 변수들과 이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개선하면서 이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의 지식은 자유재(free good)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모방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저축자의 저축 덕분에 가장 현실지향적인 사람도 점차 미개인에서 문명화된 인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은 곤궁하고 야만적이며 야비한 생활 상태로부터 보다 장기적이고 세련되며 안락한 생활로 변모한다.”

3. 시간선호, 사유재산, 범죄 및 정부

사람은 사회 속에서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선호율은 타인들의 행위 및 행위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신이 경작하는 행위 혹은 그 경작의 결과물에 대해 누구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의 시간선호율은 낮아지는 경향과 함께 문명의 발전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간선호율은 높아지고 문명은 퇴보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다 빼앗아간다면, 다음부터는 1년이나 걸리는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단순히 당장 수확하거나 채집해서 먹을 수 있는 것만을 찾을 것이다. 저축은 당연히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시간선호율이 극도로 높아진다면, 우리는 원시사회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사유재산권은 사람들의 시간선호도를 낮춤으로써 인류가 원시사회에서 벗어나 문명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요인이며 근원이다. 나아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상호 교환을 하면서 서로의 지식을 모방하게 된다면 문명화의 과정은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시간선호율을 높여 문명퇴행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강도나 도둑과 같은 범죄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 간섭 등 정부에 의한 침해가 그것이다. 두 가지 모두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시간선호율과 문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다.

먼저 범죄의 경우를 보자. 범죄자의 행위는 크든 작든 피해자의 시간선호율을 높이고, 벽이나 담장 설치, 보안설비 마련 등 추가적인 비용과 지출을 유발한다. 하지만 범죄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범죄에 대비하여 담장을 쌓고 무장(武裝)을 하는 등의 물리적 보호책과 함께 보험에도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범죄가 시간선호율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일 수 없다. 한 차례 도둑이 들어 내 재산을 훔쳐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회적(一回的)이고 단발적인 사건일 뿐으로 피해자인 나의 시간선호율에 체계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자의 행위가 피해자는 물론 일반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범죄자 본인에 의해서도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여겨진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로 간주되며 범죄자를 응징하고 그로부터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경우를 살펴보자.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정부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것이 시간선호율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 면에서 범죄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경우와는 차원을 달리 한다.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침해가 이루어지더라도 정부는 물론 일반사람들조차 그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피해를 당하는 재산 소유자조차도 정부 간섭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대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의무휴일제를 실시하고,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에 의한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럴 경우 항거는 물론 자신을 방어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인식됨으로써 개인들의 시간선호는 범죄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범죄행위는 간헐적이고 단발(單發)적이며 지속적이지 않다. 반면, 정부의 재산권 침해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다. 또한,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곧바로 현장에서 떠나지만, 정부는 계속 ‘보호자’ 행세를 하며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주위를 맴돈다. 피해자는 항거나 방어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방비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 행위는 시간선호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승시킨다. 더구나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지속성 및 체계성으로 인해 주어진 시간선호스케줄 상에서의 시간선호율의 이동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선호스케줄 자체가 상승하는 결과도 낳는다. 범죄에 의한 재산권 침해보다도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훨씬 더 ‘악성(惡性)’이다.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보다 확대되고 심화되면 시간선호율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고, 이로써 자본과 내구소비재를 축적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인류의 행보는 멈출 뿐만 아니라 급기야 문명퇴행의 방향으로 역전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했던 사람들이 술주정뱅이나 몽상가로 바뀔 것이며, 어른은 아이로, 문명인은 미개인으로, 생산자는 범죄자로 전락할 것이다.”

19세기 말 조선인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말 조선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목격한 바는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대신 특하면 싸움이나 하고 술주정이나 하는 조선인, 투전판에서 한창 노름이나 열심히 조선인들이었다. 한편, 이 외국인들이 연해주에 가서 목격한 것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선인들이었다. 이렇듯 같은 시기, 같은 조선인들이었지만, 조선에 살던 조선인들과 연해주에 사는 조선인들의 생활태도가 극명하게 달랐다. 그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재산권에 대한 보장의 문제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해주에서와는 달리 조선은 당시 ‘네 죄를 내가 알렸다’하며 정부관리가 무차별 폭행과 함께 무차별 강탈을 하던 때였다. 무언가를 만들거나 약간의 수입이라도 있거나 약간의 저축이 있는 것만 알려지면 붙잡혀 들어가 곤장을 맞고 몽땅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폐강도와도 같은 국가의 수탈로 인해 당시 조선인들의 시간선호율은 극단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회에서는 술주정뱅이와 노름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터이다.

4. 군주제에서 민주제로의 전환은 문명퇴행과정

앞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두 가지 종류의 행위, 즉 범죄행위와 정부의 간섭 및 강탈에 대해 살펴보았다. 범죄행위와 달리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산권 침해 행위가 범죄행위에 비해 사람들의 시간선호율을 훨씬 더 크게 높인다는 것을 보았다. 모든 정부는 시간선호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부가 동일한 정도의 해악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형태의 정부가 시간선호율에 더 큰 해악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역적 독점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모든 독점자는 독점자로서의 특권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며, 징벌의 독점권을 가진 정부 또한 자신의 부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징벌의 독점권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다. 문제는 이 징벌의 독점권을 어떤 정부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시간선호율과 그리고 문명화의 과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의 형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군주제로서, 이는 개인적 통치 형태이며, 강제적인 정부기구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제로서, 강제적인 정부기구를 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여기서 사적소유냐 아니면 공적소유냐 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적소유 형태인 군주제 하에서 보다는 공적소유 형태인 민주제 하에서 징벌로 인한 수탈이 훨씬 가혹할 것이다.

이는 잘 알려진 ‘공유지의 비극’을 생각하면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목초지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동의 소유일 경우에는 ‘먼저 사용하는 자가 임자’가 된다. 늦게 오는 사람은 풀 한포기 남아있지 않은 황폐한 목초지만 목격할 수도 있다. 공동소유자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들은 나중이야 어찌 되었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 한 끝까지 최대한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목초지는 결국 황폐화된다. 이와는 반대로, 목초지가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적 소유자는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익, 즉 자산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목초지를 황폐화시킬 리 없으며, 목초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비옥하게 만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적 소유자로서 군주는 징발의 독점권을 행사할 때 현재의 수입은 물론 자산의 현재가치까지 고려하여 전체 수입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군주제 하에서 군주의 “사적 소유는 그 자체로 경제적 계산을 가능하게 만들며 장기적 안목을 제고시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주제와 같은 사적 소유 정부형태에서는 징발의 독점권을 가진 군주의 수탈 욕망이 일정한 한계를 가질 것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공적 소유 형태인 민주정부 하에서는 자산의 현재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재수입의 극대화에만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는 민주정부의 통치자는 만약 자신이 현재 많이 걷어 소비하지 않는다면, 해당 재화 및 재원을 결코 다시는 소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출보다 세입이 많아 흑자재정을 이룬 후 다음 대통령에게 인계한들 그 다음 대통령만 좋다. 흑자재정을 이룬 대통령은 그 돈을 결코 다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야말로 ‘누구 좋으랴’고 흑자예산을 편성해서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 줄 통치자들이 있을까. 흑자가 날 것 같으면 이른바 ‘선심성 퍼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새로운 지출항목을 만들어서라도 지출을 늘리고, 가능한 많이 걷어 많이 지출하며, 그것도 모자라 빚을 내서라도 지출을 늘리는 것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다. 미래의 재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그것은 현직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의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케인즈 및 케인즈류의 학자들이 말하는 ‘경기변동 대책’은 공적 소유 정부형태인 민주제에 대한 통찰력의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들은 ‘경제가 불경기면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를 살리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흑자 재정을 그 빚을 갚으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국가부채를 누적시키지 않고 경기변동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적 소유형태인 민주정부 하에서는 호황일 때 쌓여야 할 흑자재정이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임기가 제한되어 있어 곧 물러나야 하는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재원을 쓰지

않고 쌓아서 다음 통치자에게 넘겨주는 ‘바보같은 짓’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세입이 많을 때는 많이 걷히는데로 다 지출해버리고, 세입이 부족할 때는 빚을 내서라도 많이 지출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결국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만 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현실에서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다.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채무비율)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997년 GDP의 11.4%였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2000년에는 17.5%로 증가했다. 이어 5년 후인 2005년에는 이 비율이 27%로 치솟았고, 다시 5년 후인 2010년에는 31%로 높아졌다. 다시 5년 후인 2015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37.9%까지 급속하게 상승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2017년 1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이후 5년 간 G20 중 시장가치 기준 정부부문 부채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던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5년 사이에 무려 66.7%나 증가했다.²⁾

민주정부 하에서는 ‘현재의 통치자가 현재의 재화들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재화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은 곧 민주정부는 징발을 함에 있어 절제를 할 이유가 없음을 뜻한다. 징발을 자제함으로써 세금이 낮아지면 생산자들은 보다 많이 생산하고 사회는 번성해지며, 그럴수록 정부가 가진 징발독점권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 혜택은 현직 통치자가 아닌 다음 통치

2) 디지털 타임스, <한국 국가부채 5년 간 67% 급증...G20 ‘최고 속도’>, 2017.1.3.

자가 보게 된다. 또한 군주는 자신의 자산을 개인적 상속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민주제의 통치자는 그럴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민주정부의 통치자로서는 몰수나 징발행위를 절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공적 재산으로서의 민주정부의 자산은 매각되지 않으며, 따라서 시장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즉 사적 소유 정부형태인 군주제에서와는 달리 공적 소유 정부형태인 민주정부 하에서는 경제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결국 군주제에 비해 민주제에서는 자원이 가능한 한 빠르게 고갈될 것이다.

정부로부터 징발을 당하는 피지배자들이 징발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군주제와 민주제에서 각기 다르다. 군주제나 민주제나에 따라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구분과 계급의식에서 차이가 생기고, 이 차이가 정부 권력의 행사에 대해 저항하는 강도(強度)에 차이를 만든다. 왕과 왕족, 그리고 왕이 고용한 관리들만이 왕의 배타적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배제된다. 이는 사적 소유 정부형태인 군주제에서는 지배받는 일반대중에게 '계급의식'을 갖도록 만들고,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권력에 반대하고 저항하도록 자극한다. 과도한 과세는 피지배계급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군주제 하에서 징발의 독점권 행사를 절제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반면에, 민주제 하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구분이 흐려지고, 그런 구분 자체가 없다는 환상마저 생긴다. 이에 따라 정부권력에 대한 저항은 약할 수밖에 없고, 고율의 과세에 대한 저항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정부 부채의 경우도 군주제 하에서보다는 절제하지 못하고 급증하게 된다. 정부의 사적 소유자로서 왕은 정부의 모든 부채를 개인적으로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반면에, 공적 소유 형태인 민주제 하의 통치자는 자신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가 발생시킨 부채는 다음 정부 혹은 미래의 정부와 통치자가 해결해야 할 '공적 부채'가 되기 때문이다. 군주제가 아닌 민주제 하에서 정부의 부채는 더욱 많이 증가할 것이고, 이 공적 채무를 갚기 위해 미래의 시민들의 조세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독점적 행위자로서 정부는 그 본성상 자기성장을 위한 내재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징발의 독점자로서 정부는 자신의 부와 수입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시간선호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높이고, 그럼으로써 문명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심한 경우 거꾸로 돌리게 된다. 정부 자체가 문명 퇴행

세력의 원천인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사적 소유 정부형태인 군주제 하에서보다도 공적으로 소유된 정부형태인 민주제 하에서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군주제로부터 민주제로의 전환은 문명의 발전과정 이 아니라 오히려 문명의 퇴행과정인 셈이다. 군주제가 되었던 민주제가 되었던 인간 문명의 근원은 정부에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문명퇴행을 일으키는 원천 이다. 인간의 문명과 사회적 평화의 근원은, 앞서 언급했듯이, 사유재산이다.

2장 군주제, 민주주의 및 자연적 질서의 이념

1. 민주제 하에서의 착취의 심화와 현재지향성의 강화

앞 장에서 논의했던 시간선호율과 정부, 그리고 시간선호율과 사적 소유 정부 형태 및 공적 소유 정부형태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부의 재산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는가 아니면 공적으로 소유되고 있는가 하는 차이는 사람들의 시간선호율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그에 따라 경제와 문명에 미치는 효과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핵심은 두 가지다. 1) 사적 정부 소유자는 현재수입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의 시간선호도는 낮을 것이고 그의 경제적 착취의 정도는 공적 소유 정부 하에서보다는 낮을 것이다. 2) 공적 소유 정부 형태 하에서 일반사람들은 보다 가혹한 착취의 대상이 될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다 현재지향적이 될 것이다. 즉 일반사람들의 시간선호율은 사적 소유 정부 하에서 보다 공적 소유 정부 하에서 보다 높아질 것이다.

현실은 어떠했는가?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전환된 이후 실제로 정부에 의한 착취가 증대했는가?

서양의 역사에서는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왕이나 왕족들이 통치했던 구체제로부터 국민에 의해 선출된 통치자가 지배하는 민주공화제로의 전환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보통선거권이 도입되었고, 모든 권력은 의회와 공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리들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비대해지고 사회적 시간선호도는 체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주제 기간에도 징세규모는 증대되었다. 그러나 군주제 전 기간을 통해 정부수입의 비중은 놀라울 정도로 낮았다. 11세기부터 전 유럽에 걸쳐 공적 부분의 수입은 증대되었지만, 특수한 지역과 장소를 제외한다면 공적 권력은 국가수입의 5~8% 이상을 차지하지 않았었다.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수입의 새로운 원천들이 개발되었다. 관세, 소비세, 토지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중엽까지 소득세를 부과했던 나라는 1843년부터 부과한 영국뿐이었다. 프랑스는 1873

년에, 이탈리아는 1877년, 노르웨이는 1892년, 네덜란드는 1894년, 오스트리아는 1898년에 소득세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나머지 국가들, 스웨덴, 미국, 스위스, 덴마크와 핀란드, 아일랜드와 벨기에, 독일은 20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도입했다. 그런데, 소득세가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지출은 일반적으로 10%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전환한 이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정부지출 규모는 급속히 증가한다. 1920년대와 1930년대가 되면 대략 23~30%까지 높아지고, 1970년대 중반이 되면 이 비율은 50%에 달하게 된다. 공무원의 숫자도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민주제로의 전환 이후 정부에 의한 착취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보다 현재 지향적으로 변해갔다.

복지국가의 출현 역시 사람들을 보다 현재 지향적으로 만들었다. 민주공화제 하에서의 복지국가의 출현은 사람들의 지적,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고 현재지향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 복지국가의 출현이야말로 사람들의 지적 및 도덕적 힘을 약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다.

민주제의 큰 특징은 평등주의인데, 이 평등주의는 필연적으로 개인적 책임의 집단화를 수반한다. 미디어 매체에서 들리는 얘기는 온통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이다. ‘개인의 책임’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한 현상은 복지국가의 출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적 부문 지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했던 군사비 지출은 20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겨우 10~20%만을 차지할 뿐이고, 공적 지출의 50% 이상은 복지지출에 쓰이고 있다.

복지국가 및 개인적 책임의 집단화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정적 현상들을 유발한다. 복지국가를 명분으로 가족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결혼과 가족, 그리고 자녀들의 가치를 하락시켰다. 민주공화제로의 전환 이후 자녀들의 수는 하락하였고, 이민을 포함하지 않은 국내 인구의 규모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 동시에 이혼율, 사생아, 편부모, 독신, 낙태율은 점점 늘어났다. 높은 현재지향성, 즉 높은 시간선호도에 따른 현상들이다.

아래 그림은 1970~2015년까지의 우리나라 가임여자 1명당 합계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 4.53이던 합계출산율이 1978년 2.64명으로 크게 낮아졌고, 이어 1990년 1.57로 더 낮아졌다. 2000년대 들어서에는 그보다도 더 낮아진 1.2명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범죄행위 역시 시간선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에서 스스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계획과 인내심, 희생이 따른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는 등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살인, 강도, 절도 등 대부분의 심각한 범죄행위는 그러한 훈련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범죄자가 발각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불확실한 것이지만, 범죄자가 얻는 보상은 즉각적이고도 명백하다. 따라서 사회적 시간선호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공격적 범죄행위가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복지국가의 출현과 개인적 책임의 집단화는 살인, 강간, 절도, 강도 등 죄질이 나쁜 범죄의 발생율을 체계적으로 상승시켰다.

2. 민주주의의 미래와 자연적 질서

보다 많은 착취보다는 보다 적은 착취, 단견(短見)과 무책임보다는 장기적 안목과 자기 책임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역사적 이행은 역사적 진보가 아닌 문명의 퇴행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민주공화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비용과 공적 부채는 경제적 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사회적 붕괴와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까지 다다랐다. 착취심화 현상과 현재지향성 경향이 지금까지처럼 계속된다면, 민주복지국가들은 1980년대 동유럽의 사회주의 인민공화국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붕괴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렇게 암울하다면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

을 해야 하는가?’ 아무리 민주주의에 문제가 많다고 해도 군주제라고 하는 구체 제로 회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군주제가 민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고 는 하지만, 군주제 하에서도 착취는 다반사였고 시간선풍율을 높이는 경향도 여 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 것 도 확실하다. 군주제 하에서보다도 민주제 하에서 착취가 더 심하고 시간선풍율 을 더 높이면서 문명퇴행현상까지도 유발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역사의 과정은 이념에 의 해 결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군주제가 한창일 때 선거 에 의해 통치자를 선출한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며, 또 민주주의가 한창 인 상황에서 ‘군주와 신민’이라는 관계 또한 상상할 수 없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현실화된 것은 과거의 이념이 깨지고 새로운 이념이 인정되었 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견고하 다고 느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다수결 규칙이 ‘민주주의 만세!’를 외칠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민주주의는 군주제보다도 더 많은 착취와 반문명화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인식 하고 민주주의 사상과 다수결 규칙을 거부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울러, 군주제와 민주제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 은 ‘자연적 질서’의 이념이다. 자연적 질서라고 하는 대안은 인간문명의 궁극적인 원천이 군주제나 민주제 같은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 생산, 자발적 교환에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이념이다. 자연적 질서 하에서 정부는 지역적 으로 큰 정부일수도 있고 작은 정부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연적 질서 하에서 정부의 크기는 해당 정부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사적 소유자들의 숫자와 범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적 질서 하에서 탄생하는 정부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구성될 것이므로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정부보다는 다수의 작은 정부들이 출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자연적 질서 이념은 교환경제에 기반을 둔 사유재산의 유지와 보존은 그 전제로서 자발적으로 인정된 자연적 엘리트(a nobilitas naturalis)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념이다. 사유재산을 소유한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는 자연적으 로 비평등적이며 위계적이며 엘리트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갈등 은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

선견지명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에게 그 해결을 의존하게 된다. 바로 이들이 전형적으로 재판관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며, 이들이 바로 자연적 엘리트라 불리는 사회의 리더들이다.

군주제의 기원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군주 역시 자연적 엘리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군주제가 확립되면서 군주가 다른 자연적 엘리트들을 배제하고 재판이나 조정의 역할을 독점하면서 법의 질은 저하되고 비용은 상승했다. 즉 문제는 엘리트나 귀족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독점에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은 법과 법집행의 독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왕을 ‘보통사람들’로 대체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앞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정부가 갖고 있는 법과 법집행의 독점권을 해체하는 일이다. 나아가 분권적 의미를 갖는 사회세력 혹은 분리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세력들이 출현하고 그들의 이념이 지지받도록 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작은 정부 하에서, 그리고 이들 정부들 간의 경쟁 속에서 착취의 강도는 크게 약화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탁월한 소수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인정된 엘리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고, 이들 경쟁적 재판관들과 중첩된 사법권이라는 자연적 질서의 이념이 합법성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

3장 민주주의 정부 자체가 문제

미제스는 “만일 ‘자유주의 강령’을 한 단어로 집약한다면....소유권, 다시 말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바로 그것이다....자유주의의 다른 모든 주장들은 이러한 기본적 요구의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다.”고 했다. 그는 바로 이 사적 소유권에 기초하여 사회의 출현을 설명한다. 사람과 소유권은 다양하고, 이 다양성의 결과 분업과 인간의 협동이 발생하며, 노동 분업이 고립적 자급자족보다 훨씬 생산적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사회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출현한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타인의 삶과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회생활의 규칙을 억지로라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그런 사람을 사회로부터 배제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그 강제력은 국가가 소유하며, 국가는 이 강제력을 소유권, 자유 및 평화의 보호라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개인의 사적 소유권, 자유 및 평화를 보호하는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는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자유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볼 때 군주제는 자유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다. 군주제는 개인들의 사적 소유권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제에 적대적이었던 미제스는 그 대안으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정부를 들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제스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수결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제스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단순히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자기 통치’(self-government), ‘자기 지배’(self-rule)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민주정부란 본질적으로 자발적인 구성원들의 조직이며 구성원들 각자의 탈퇴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인정하는 정부이다. 즉 미제스는 무제한적 탈퇴의 권리와 구성원 자격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민주정부’라면 사유재산 보호라고 하는 국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는 1861년까지는 미제스의 ‘민주주의 정부’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정부였다. 탈퇴의 권리가 존재했고 미합중국은 독립적인 주(州)들의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북전쟁에서 링컨이 승리하면서

더 이상 탈퇴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민주주의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게 되었다. 탈퇴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민주주의 정부의 출현은 곧 지역적 독점자의 출현을 의미한다. 모든 독점이 그러하듯, 지역적 독점자인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 사법행위와 보호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 양과 질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민주주의 정부와 더불어 등장하는 것이 재분배와 복지국가다. 1인1표의 다수결 제도에서 민주정의 관리자는 선거에서 다수득표를 하기 위해 사람들과 집단들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회이든지 ‘가진 자’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특혜와 특권은 거의 예외 없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성향을 띠게 된다.

이런 재분배정책과 복지국가는 사람들의 품성(品性)을 타락시킨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을 억제해야 하고, 타인의 재산을 탐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소수의 범죄자들만이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의 재분배정책과 복지국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재산에 대한 자신들의 탐욕을 마음껏 발산하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억제되었던 것이 이제는 정정당당한 권리로까지 인정을 받는다. 일례로 서울의 어느 지하도에 가면 몇 년 째 장애인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마련한 부스(Booth)에서 농성도 하면서 서명도 받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이다. 이들은 부모나 자식, 혹은 남편과 아내가 장애인 가족을 부양할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부양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을 국가나 사회가 파괴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주장을 뒤집어보면 장애인 부양의 의무가 국가나 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국가나 사회가 그런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라는 주장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가족이 아닌 당신이 나를 의무적으로 부양해야한다’는 주장이 된다. 이런 주장을 이들은 읍소(泣訴)하고 공손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것 내놔!’하는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읍소와 공손한 부탁의 대상이었던 것이 복지국가에서는

‘권리’로 변질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른바 헌법의 ‘행복추구권’이란 것도 많은 경우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탐낼 수 있게 되었다. 군주제 하에서는 군주만이 잠재적 위협과 ‘악(惡)’이었다면, 민주주의 하에서는 누구나 잠재적 위협과 ‘악’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의 다수결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이 성공하도록 만든다. 대중선거에서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데 있어 별로 거리낌이 없는 사람, 즉 내적인 도덕적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대중의 양립불가능한 요구들을 수용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비도덕적인 선동정치꾼이 승리하게 된다. 멘켄(Mencken)은 이렇게 표현한다: “보통 정치가들은 아주 다른 이유로 선택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그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정치인들은 모든 것을 약속한다. 나라 안의 남자,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약속한다. 정치인들은 부자를 가난하게 하고,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고,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해독할 수 없는 것을 해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온 나라를 헤맬 것이다.....그들 대부분은.....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을 가장 많이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승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지난 1세기 이상 민주주의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조세부담은 크게 높아졌고,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정작 시민들이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유일한 임무, 즉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보호는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국가는 우리의 사적 소유권을 점점 더 침식해 들어오고 재산의 가치를 파괴하며, 심지어 개인의 삶에 대해서까지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의 미래를 위해 자유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서 보았듯이, 자유주의자들이 할 일은 민주주의 정부가 갖고 있는 법과 법집행의 독점권을 해체하고, 나아가 분권적 의미를 갖는 사회세력 혹은 분리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세력들이 출현하고 그들의 이념이 지지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방어적 전략과 공세적, 적극적 전략이 있다. 방어적 전략은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

는 하지만 정부운영을 지지하거나 촉진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방어적 전략은 공세적 전략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공세적, 적극적 전략은 대중을 대상으로 민주정부의 이상과 제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널리 홍보하는 일이다. 미제스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여론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었다. 그들은 군주의 권력이나 민주정의 통치자의 권력이나 관계없이 모든 권력은 궁극적으로는 물리적 강제보다는 여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주제의 정부와 그의 대표자들이 도덕적, 경제적 사기꾼이며 기만자임을 무자비하게 폭로하고 조롱하며 모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특정한 정부정책이나 인사에 대한 단순한 비판, 혹은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주변을 두들기는 것일 뿐,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할 수 있다. 특정한 정부정책의 결점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부 그 자체의 저변에 놓여 있는 본질적인 결함을 파헤치고 비판해야 한다.

민주주의 정부는 두 개의 기둥에 의지하고 있다. 하나는 사유재산의 보호는 강제적 독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강제독점에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으며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출하는 것이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 보호에 대한 최상의 보장책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두 개의 기둥 모두가 지적인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

4장 부도덕한 민주주의의 민낯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자. 만일 일곱 살짜리 아이에게 까지 투표권을 준다고 가정할 때, 정치꾼들은 이 아이들에게 무슨 공약을 하고 무슨 약속을 하며, 무슨 일을 벌이고자 할까? 공짜 햄버거, 공짜 콜라, 공짜 PC, 그리고 컴퓨터 게임에 대한 완전하고도 평등한 접근권 보장 등의 공약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이와 다른가? 아이가 있다면 무상 보육, 아픈 사람에게는 무상 의료, 학생들이 있다면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 대학생에게는 반값 등록금, 노인들에게는 무상 틀니와 무상 보청기 그리고 노령연금 인상, 실업자에게는 충분히 먹고 살만큼의 실업수당, 구직자에게는 충분한 일자리 제공,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무자에게는 무이자 혹은 채무감면, 세입자에게는 월세 동결 및 상한제, 여성에게는 여성고용의무제 및 여성할당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장애인할당제, 청년에게는 청년고용의무제 및 청년고용보조금.....요즈음에는 청년이니까 그냥 돈을 준다는 이른바 ‘청년수당’도 있다.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청년배당’이라고 부른다. 청년배당을 실시하는 성남시장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토지보유세를 새로이 부과해서 전국민에게 30만 원씩 ‘토지배당’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수결 민주주의에서는 다수 득표를 하는 자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획득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무슨 약속이든 할 것이고, 그것 중 태반은 특혜와 특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다수결 민주주의와 선거는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가 소수의 ‘가진 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무자비하게 자신들의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창구로 전락했다. 민주화는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향한 거의 영속적 움직임의 시동을 건 셈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만능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문명의 몰락을 막고자 한다면 현재의 점진적 ‘문명퇴행’ 현상의 근본적 원인인 민주주의의 이상을 불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이상을 불법화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주요 사상가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주주의야말로 어중이떠중이들의 통치형태라며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였다.

많은 사상가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민주주의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도덕하고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수결 민주주의에서는 다수를 형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약탈할 수 있다. 이것은 정의(正義)가 아니라 부정의(不正義)하고 비도덕적이다.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하는 자들은 도덕적 사기꾼에 불과하다. 인류의 번영과 문명의 원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유재산, 생산, 그리고 자발적 교환이다. 사적 소유와 다수결 민주주의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5장 ‘발로 하는 투표’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중앙집권화는 ‘좋은 현상’이며 발전적 과정이라 보는 반면, 탈퇴와 분리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라 간주된다. 이렇게 보는 배경에는 보다 거대한 정치적 연합은 보다 넓은 시장을 포함하며, 따라서 부를 증대시킨다는 가정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그렇지 분명하지 않다. 그 이유는 우선,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통합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통합은 조세부와 규제 범위의 지역적 확장을 의미하는 반면, 경제적 통합은 지역간 분업과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 통합은 경제적 번영으로 이끌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경제적 퇴보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낮은 세금과 적은 규제를 시행하는 정부가 주도하여 높은 세금과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정부를 흡수하는 정치적 통합이라면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경제적 퇴보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통일이 되면 경제가 번영할 수 있지만, 거꾸로 북한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통일이 되면 경제적 퇴보와 붕괴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즉 중앙집권화와 경제적 번영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오히려 유럽이 작은 규모의 정부들로 나뉘어져 분권적 권력구조를 지니고 있을 때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 확대와 경제의 급성장이 이루어졌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은 정부들로 구성된 분권적 구조 하에서는 ‘발로 하는 투표(Voice&Exit)’가 가능했었고, 따라서 작은 정부들 간에 ‘주민 유치’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적 통합이 점차 진행되어 영토가 넓어지고 남아 있는 경쟁국들은 적어지고 멀어질수록 국제적 이민에 드는 비용은 증가하고, 그럴수록 자유주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동기는 감소한다. 만일 단일의 세계정부가 출현한다면, 정부에 대하여 ‘발로 하는 투표’는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 권력의 확대에 대한 근본적 견제수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앙집중화 및 지역적 독점자로서의 권력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견제수단이 필요하다. 그 견제수단이 곧 탈퇴의 자유와 분리주의이다. 유럽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탈퇴와 분리주의는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번영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탈퇴의 자유와 분리주의가 인

정되면 세계는 수만 개 혹은 수십만 개의 지역국가, 지방, 주, 또는 독립적 도시 국가들로 구성되고, 이들 사이의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통합된 소규모의 자유정부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세상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수준의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진보를 이룬 세계가 될 것이다.

6장 자유이민(자유이주)인가 제한이민(제한이주)인가?

‘자유’라는 단어가 만병통치약처럼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부와 복지를 가져다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자유’라는 단어가 오용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자유이민’과 ‘자유이주’도 ‘자유’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해당된다. 정확히 따져보면 ‘자유이민’이 사실상은 ‘강제통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역’에 ‘자유’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정부나 제3자의 개입 없이 오직 사적인 개인과 회사가 주문하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무역’에 ‘제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사적인 개인과 회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문하고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한지를 정부나 제3자가 정해주고 판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한무역은 사적인 개인과 회사가 자신의 의지대로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폐기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때의 ‘자유’와 ‘제한’이란 수식어는 오해의 소지 없이 올바르게 쓰인 경우이다.

그런데, ‘이민’ 혹은 ‘이주’라는 단어에 ‘자유’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나는 우리 동네에 성폭행범이 이웃해서 사는 것이 싫는데, 그 성폭행범에게 ‘자유이주’의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억지로 성폭행범과 이웃해서 살아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의 ‘자유이주’는 사실상의 ‘강제통합’을 의미한다. 반대로 ‘제한이민’과 ‘제한이주’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합의해서 ‘성폭행범은 우리 마을에 들어와 살 수 없으며 강제 추방한다’고 결정한다면, 이것은 곧 ‘제한이주’를 뜻한다. 이 경우 ‘제한이주’는 곧 무단침입이나 강제통합으로부터 사적인 개인과 회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유이민과 제한이민 중 어느 것이 사적 소유권에 기반하고 있는 자유주의 사회와 어울리는 것일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유이민’ 혹은 ‘자유이주’라고 하는 명분으로 정부가 사적 소유자들의 의지 및 선호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주자들을 받아들여도록 하는 것은 ‘자유’를 빙자한 ‘강제’이며, 이는 자유사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다.

이민과 이주정책에 있어서도 군주제와 민주제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한 국가의 자본가치들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군주는 자신의 자본가치를 감소시

키기보다는 보존하거나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이민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즉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주민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자제시키고, 비생산적인 사람들, 즉 범죄자와 부랑자, 건달 등은 추방하고자 할 것이다. 입국정책도 마찬가지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받아들이고,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군주의 이민정책은 곧 사적 소유자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민주정부의 이주 및 이민정책은 이와는 달리 민주주의 특유의 평등주의에 따라 차별이 없는 평등주의적 이민정책, 다시 말하면 ‘자유이민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민주제의 통치자는 자본가치를 소유하지 않으며 현재의 수입과 당장의 선거에서의 승리에만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는 생산성보다는 ‘표’에 미칠 영향을 더 크게 고려하게 된다. 아주 생산성이 높은 주민이 떠나가고, 반대로 비생산적인 사람이나 부랑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될 수 없다. 그들 모두 동등하게 1표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치자에게는 자신의 평등주의적 조치들에 찬성표를 던질 성향의 사람이 이 정책의 희생자로서 반대표를 던질 성향의 생산적 주민들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결국 1인1표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규칙으로부터 강제통합은 예정되어 있다.

강제통합은 자유사회와는 어울리지 않으며, 따라서 이런 강제통합을 없애고자 한다면 사회의 반민주화(de-democratization)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의 허용이나 금지에 관한 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닌 주, 도, 시, 읍, 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유재산 소유주 개인과 이들의 연합체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분권화와 분리이다.

7장 고전적 자유주의의 오류와 자유의 미래

자유주의는 정부에 대한 이론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강제적인 지역적 독점자로서의 정부라는 정의(定義)를 받아들인 것은 자유주의의 중대한 오류였다.

자유주의는 자기 소유권, 소유되지 않은 자원들에 대한 최초의 선점, 재산권 및 이성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따른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계약 등의 개념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의 규칙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이 과업이야말로 정부의 유일무이한 기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만일 정부가 마치 개인이나 기업처럼 자신의 고객들인 사유재산의 소유자들에게 보호와 안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유재산 소유자들은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자발적으로 지불한다면, 자유주의자들의 이 결론은 옳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정부는 이런 정부가 아니다. 보통의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는 재판권에 대한 강제적인 독점자이며, 자신이 제공하는 보호와 안전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징세권도 갖고 있다. 이런 정부는 자유주의가 자신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개념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독점적 기관, 그리고 가격을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기관과 효율적인 재산의 보호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홉스(Hobbes) 이래 국가주의자들은 이런 식의 '헌법적 계약'의 결과 국가가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런 정부를 용인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특정인 혹은 특정 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지역에서 보호와 법적 최종 결정권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다른 사람 혹은 기관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계약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모든 사유재산의 소유자들이 자신의 최종 결정권 및 자신과 자신의 재산에 대한 보호문제를 다른 누군가에게 영원히 넘겨준다는 것이다. 즉 스스로 영원한 노예가 되겠다는 사실상의 복종계약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 계약은 독점적 보호자에게 영구적 징세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피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해준다. 그렇다면 이런 복종적 계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사유재산과 개인적 자기소유권 등의 개념을 기둥으로 하는 자유주의 입장에서 이런 식의 복종적 계약은 처음부터 허용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지역적 독점자로서의 정부가 자기소유권, 최초의 선점, 재산권 및 계약 등의 기본적 자유주의 원리와 어울릴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 이런 치명적 오류는 결국 자유주의자들을 커다란 모순에 빠지게 만든다.

독점자로서의 정부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 이런 근본적 오류로 인해 자유주의는 사실상 자신이 본래 보존하고 보호하려 했던 자유와 재산권을 지키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만일 정부의 독점이 정당하다면 중앙집권화도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와 분권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선호와 애착은 무엇인가? 또 만일 일방적 과세가 정당하다면 더 많은 조세부담도 정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적은 세금과 보다 적은 규모의 재분배를 관철하기 위해서 자유주의가 내세울 수 있는 도덕적이고 근본적인 잣대는 무엇이 있는가? 자유주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덕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논쟁 대신 단순히 비용-편익 계산만을 하면서 가부(可否)를 논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는 임의적이며, 그것을 참고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든 제안들은 단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되면 자유주의자는 공상적이고 혼란스러우며 무원칙하고 심지어는 기회주의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은 일관적이며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일단 정부의 원리를 잘못된 논리로 수용하면 자유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즉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유주의에는 미래가 없다. 오히려 자유주의의 미래는 사회민주주의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향을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자유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유주의는 반드시 자신의 근본적 오류를 바로잡아야만 한다. 첫째, 어떠한 정부도 계약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둘째, 모든 정부는 자신이 보존하고자 하는 것들을 오히려 파괴하며, 그리고 셋째, 오직 자율적 계약과 업체들 간의 경쟁체제를 통해서만 보호기능이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보호자와 피보호자 사이의 자율적인 계약과 보호자 역할을 하는 업체들 간의 경쟁체제를 통해 보호기능이 수행되는 사회를 '사유(私有) 무정부주의 사회' 혹은 '사법(私法) 사회'라고

부른다.

‘사유(私有) 무정부주의 사회’ 혹은 ‘사법(私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이제 자유주의는 단순히 정부를 작은 정부로 대체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탈퇴와 분리의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탈퇴와 분리, 즉 마침내 국가의 관할 영역이 사라질 때까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지역들이 무제한적으로 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구해야 한다. 무제한적 탈퇴를 허용한 정부는 더 이상 법과 질서의 강제적 독점자가 될 수 없으며, 단지 하나의 자발적 결사체에 불과하게 된다. 결국에는 국가는 사라질 것이다.

8장 '사유 무정부주의 사회'에서의 보호와 안전의 문제

과거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담한 경제성과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과 국가주의자들은 이 참담한 결과의 원인을 사회주의 그 자체의 치명적 결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이른바 사회주의자들과 국가주의자들의 상습적인 '핑계대기' 전략으로서 현실 사회주의와 이상적 사회주의 사이의 괴리 때문에 참담한 결과가 나왔을 뿐 사회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체제였다. 현실 사회주의든 이상적 사회주의든 사회주의에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경제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붕괴가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체제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와 같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어떠한 개혁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개혁이 아닌 폐기가 답이라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핵심적 특징인 재판권의 독점과 징세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민주제 정부의 문제점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적 쇄신이나 헌법 개정도 전혀 쓸모가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해야 하는 것처럼, 정의와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제도 역시 개혁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가 폐기된 이후 나타날 '자유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보호는 1) 자신들의 수입을 강제가 아닌 자발적 방식으로 얻으며, 2) 국가처럼 치안과 사법적 보호의 강제적 독점자라고 자만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는 사람 혹은 기업들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그런 것처럼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 그리고 방어서비스는 다른 모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매매할 수 있으며 또한 매매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자유로운 사회'가 자유주의의 이상과 어울리는 사회다.

지역적 독점자로서의 국가가 사라진 자유로운 사회에서 이제까지 국가가 담당했던 안전과 보호 기능, 즉 안전재(安全財)를 생산하는 것은 가능한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방어와 안전이 보험의 한 형태이며, 방어비용이 일종의 보험료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즉 방어와 보호는 일종의 '보험'이며, 보험회사

들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모든 침입을 다 보험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일례로 피보험자가 사태를 발생시키거나 사태를 유도하는 것은 보험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제공할 수는 없으며, 조건적 보호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보험회사가 계약을 통해 피보험자의 행동을 제한하여 계약자의 '도발'을 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의 바로 이 부분, 즉 비공격적이고 비도발적인 특징은 사람들의 품행과 문명사회의 발전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우선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사람은 자신을 받아줄 보험회사를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허약하며 공격받기 쉽다. 다른 한편, 독자적인 자기방어보다 양질의 보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비공격적이고 예의 바른 품행의 규범을 따를 때에 한하여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정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공격적이고 비도발적인 사회의 품행을 따르도록 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상호 경쟁하는 보험업자들의 조직은 법률의 발달에 이중의 효과를 줄 것이다. 먼저 보험업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강요하는 대신 가격은 물론 서비스의 차별화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도 경쟁할 것이다. 보험수요자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재산에 적용되는 규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때때로 그 규약을 변경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의 유연성이 체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다른 한편, 경쟁적 법 규약을 제공하는 보험업자들의 조직은 법률의 통일성을 촉진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경쟁하는 보험업자들과 법 규약들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한 보험업자가 제공한 법 규범이 많은 보험수요자들에게 인정받게 되면, 다른 보험업자도 이 법 규범을 자연히 따르게 될 것이다. 보험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공동 법률체계의 개선과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경쟁체제 속의 보험업자들이 제공하는 보호서비스는 독점자인 국가가 제공하던 보호서비스와는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보호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세금을 자본으로 삼는 독점적 국가는 가격과 비용을 상승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사적 이익에 관심을 갖는 보험회사들은 경쟁체제 속에서 보호비용을 낮춰 저렴한 가격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

다.

범죄의 예방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국가도 물론 범죄를 없애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세금을 재원으로 삼으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국가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일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거주자들도 투표할 수 있고 또 정부관리로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격자로부터 공격자에게로, 또 범죄율이 낮은 지역으로부터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재산권의 체계적인 재분배가 일어나며, 범죄행위가 실질적으로 조장된다. 또한 정부는 낮은 범죄율과 높은 재산가치를 나타내는 지역에 높은 범죄율과 낮은 재산가치를 보이는 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일은 경쟁적 보험회사 체제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다. 만일 보험업자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범죄가 발생했다면, 그 보험업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보험업자들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경쟁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인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정교한 범죄지표를 개발하고 꾸준히 개량할 것이다. 모든 지역은 주민들의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언어, 직업, 그리고 소득과 같은 다양한 범죄지표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그 위험도가 측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소득과 부의 재분배 대신, 새롭게 책정된 가격(보험료) 구조가 각 지역의 사회적 환경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민과 이주에 대해서도 국가와 보험업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민주제의 정부가 차별철폐정책을 통해 강제통합을 시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보험회사들은 이민과 이주에 대한 피보험자들의 차별적 경향과 선호들을 무시할 수 없다. 피보험자들의 경향과 선호를 무시한다는 것은 곧 계약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다. 게다가 보험업자들은 낮은 범죄위험과 높은 재산가치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이민과 이주는 허용하고, 높은 범죄위험과 낮은 재산가치를 야기하는 사람들의 이민과 이주는 배제할 것이다. 즉 국가는 차별철폐정책을 펴는 반면, 보험업자들은 차별정책을 펼 것이다.

누군가가 자유지역을 공격하고 침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경우 공격자가 직면하는 상대는 무장하지 않은 주민이 아니다. 오직 '국가'라고 하는 영토 내에서만 시민들의 무장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유지역 내의 보험업

자들은 피보험자들이 비무장상태로 남아 있기를 원치 않는다. 더구나 피보험자들이 비무장상태를 요구하는 보험업자들의 요구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방어의 궁극적 수단들을 포기하는 계약에 참여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선별적 가격할인 제도들을 통해 피보험자들이 무기를 사적으로 소유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나아가 공격자는 하나의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효율적이고 경쟁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들은 공격자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무장하고 잘 훈련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로써 사적으로 이윤과 손실을 내는 보험회사 체제가 개인적 및 집단적 범죄자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하며 문명화와 영구적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9장 '자유사회'로의 길

'무정부 자본주의 사회', '사유 무정부주의 사회' 혹은 '자유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폐지하고 탈퇴와 분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혁명적으로 개정하는 일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이런 위로부터 아래로의 혁명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오늘날의 정치지도자들을 자유지상주의자로 전향시켜야 가능한 일인데, 그 가능성은 지위를 단순히 세습했던 왕을 전향시킬 가능성보다도 더 낮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혁명보다는 아래에서 위로의 혁명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것도 매우 회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방식은 다수의 시민으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폐지하고 국가의 모든 징세권과 입법권을 폐지하는데 찬성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 또한 결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하에서 '투표할 권리'에 익숙해진 다수의 국민들, 소수의 재산을 빼앗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실제로 이득을 보고 있었던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분리주의 운동뿐이다.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전국적 규모에서의 분리운동이나 탈퇴운동은 다수를 차지하기 어렵겠지만, 아주 작은 지역에서 분리주의 신념을 가진 다수가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이 전략은 두 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 전략은 분리주의 운동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덜 위협적인 운동으로 만들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전략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동시에 추구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효과적 탄압에 필요한 통일된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한다면, 모든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으로 되돌리고 모든 징세권과 입법권을 불법적인 것으로 선언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 최종적으로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보호와 방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자유주의자들이 목표로 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갖게 될 것이다.

딱 맞게 풀어쓴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저 자 | 권혁철

발행처 | 자유경제원

발행인 | 현진권

발행일 | 2017년 2월 3일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13층 (우편번호:04165)

이메일 | webmaster@cfe.org

팩 스 | 02) 761 - 5058

© 자유경제원 2017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자유경제원에 있습니다.